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 3. 9 선고 2022가단123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관, 임형모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엄윤상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22. 6.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22. 7. 7. 접수 제97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주문 제1항 기재 C에 대하여 'C이 2010. 1.경 다방 운영을 위해 금전을 대여해달라고 하여, 원고가 C에게 2010. 1. 8.경 C의 누나 D 명의의 계좌로 2차례, C에게 직접 5차례에 걸쳐 총 10,600,000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0차206). 2010. 6. 21. 'C은 원고에게 1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2.부터 2010. 6. 23.(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고, 이는 2010. 7. 8.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모친 E의 소유였는데, 2020. 그의 사망으로 2021. 피고, C, D, F 등 자녀들이 각 1/7 지분씩을 상속받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상속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22. 6. 30. C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1/7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22. 7. 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C은 2022. 6. 30.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그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1534 판결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7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가) 이 사건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C의 채권자 주식회사 G와 H이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대하여 2021. 7. 7., 2021. 7. 8. 각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I, J). 2021. 7. 15.에는 F의 채권자 K이 F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L).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강제경매신청을 한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강제경매를 취하시킬지, 아니면 강제경매절차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C와 F에게 다른 채무의 존부를 물었다. C와 F은 위 강제경매 관련 채무들 외에 다른 채무는 전혀 없다면서 위 채무들을 해결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다. 그리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피고에게 “피고가 C와 F의 채무를 대위변제해주고 그들의 지분을 취득해달라고 부탁하므로, 피고가 이를 수락하였다(다만 F의 채권자 K은 피고의 대위변제를 받지 않고 강제경매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여 결국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키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합계 207,837,600원이고, 공유자별 개별공시지가는 29,691,085원이다. 피고는 이를 참작하여 C의 지분을 그보다 많은 34,51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C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6. 30.경 채권자 주식회사 G에게 21,026,920원, 채권자 H에게 5,880,000원 등 총 26,906,92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잔금 7,603,920원을 C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법무사에게 등기절차의 처리를 위임하였다. 그후 채권자 주식회사 G와 H은 2021. 7. 1.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결국 ① 피고가 공유지분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였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면 굳이 대위변제를 통하여 강제경매를 취하시키면서까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고, 경매절차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했으면 될 일이었으므로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C은 형제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상 일부 대여금이 다른 형제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C이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기도 한 점,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다른 추가채무의 존재에 관하여 단순히 물어보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어느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도 많은바, 피고 주장과 같은 정도의 개별공시지가와 매매가격의 차이만으로 피고가 위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C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전체적인 진행경과, C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나.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22. 6. 30.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인용).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식

별지